

“環境責任法” 試案

吳錫洛*

〈目次〉	
I. “環境責任法” 試案의 準備	4. “環境責任法”的 構成
1. 머리말	II. “環境責任法” 試案
2. “環境責任法” 制定의 必要性	III. [資料 I] 獨逸環境責任法
3. “環境責任法”的 法的 性格	IV. [資料 II] 獨逸環境責任法 立法理由書

I. “環境責任法” 試案의 準備

1. 머리말

大韓辯護士協會 環境問題研究特別委員會에서는 그동안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環境責任法試案을 작성한 바 있으므로 이를 여기에 소개한다.

試案은 委員長인 필자가 獨逸의 環境責任法을 참고로 하여 起案한 것을 바탕으로 獨逸의 環境責任法의 立法理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약간의 修正을 가한 뒤에 완성한 것인데, 앞으로 보다 폭넓은 意見收斂을 통하여 草案을 확정한 다음 立法資料로 國會 등 關係機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관심있는 讀者諸賢으로부터의 많은 助言을 바라마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本稿의 目的이다.

* 辯護士, 韓國環境法學會 會長, 大韓辯護士協會 環境問題研究特別委員會 委員長.

2. “環境責任法”制定의 必要性

環境侵害(環境汚染)에 대한 私法的 救濟의 容易化는 오늘날 責任法의 分野에 있어서 最大의 課題가 되어 있다. 그러나 既存法體系에 포함되어 있는 關聯法規나 判例理論의 適用만으로는 이러한 被害救濟의 容易化라는 課題의 解決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른바 遠隔損害나 累積損害의 경우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被害者의 因果關係의 立證負擔의 輕減이나 履行의 確保 등과 같은 問題는立法的 手段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解決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生態界의 保存을 위한 原狀回復의 請求도 現行法下에서는 많은 法律上 難點을 내포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環境責任의 보다 容易한 追及은 汚染源인 企業의 環境侵害의 活動動機를 억제하는 效果를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環境侵害의豫防에 기여하게 됨을 간과할 수 없다.

이리하여 環境責任法 制定의 必要性은 이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으며, 때문에 獨자적인 環境責任法의 制定은 최근에 世界的 趨勢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例, 獨·伊·塊 등).

따라서 環境侵害로 인한 被害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심각한 狀況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環境責任法의 制定을 서둘러야 할 必要性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 바 있다.

3. “環境責任法”的 法的 性格

環境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法規인 環境法은 그 法의 性格과 適用領域의 觀點에서 이를 環境行政法과 環境刑法 및 環境私法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私法上의 環境責任을 規律하는 環境責任法은 그중 環境私法에 해당된다. 따라서 環境行政法에 포함되어 있는 損害賠償規定도 實質적으로는 私法上의 環境責任은 規定하고 있는 點에서 環境私法의 一部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環境責任法 중에도 公法的 性格을 띤 規定이 있을 수 있어 이를 規定은 實質적으로 環境行政法(예컨대 行政廳에 대한 情報請求權에 관한 規定) 내지

環境刑法(예컨대 處罰規定)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同一한(또는 單一한) 環境責任法이라고 하더라도 當該規定의 實質적인 性格에 따라 이를 지배하는 法原理 역시 상이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4. “環境責任法”的 構成

環境責任法의 構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要素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立法의 目的과 概念定義

둘째, 環境責任의 成立要件

셋째, 環境責任의 推定

넷째, 情報請求權 및 閲覽請求權

다섯째, 環境責任의 内容

여섯째, 他法律 또는 他法律에 의한 責任과의 關係, 그리고

일곱째, 經過規定이다.

II. “環境責任法” 試案

第 1 條(目的)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施設에 의하여 야기된 環境侵害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경우의 損害賠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를 保護하고 企業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施設의 責任) ① 第1條에 規定된 施設에 의하여 야기된 環境侵害로 인하여 第3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그 施設의 保有者는 被害者에게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環境侵害가 아직 完成되지 아니한 施設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라도 그 侵害가 施設의 完成後 危險을 隨伴하게 할 狀況에 기인한 때에는 그 施設의 保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이 있다. 環境侵害가 操業이 中止된 施設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라도 그 侵害가 施設의 操業中止前

危險을 隨伴하게 한 狀況에 기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 第3條(概念의 定義) ① 損害가 地面이나 空氣 또는 물을 통하여擴散되는 物質, 振動, 驚音, 壓力, 빛, 가스, 蒸氣, 熱이나 其他 現狀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損害는 環境侵害로 인하여 發生한 것으로 본다.
② 施設은 工場, 屋外事業場 및 倉庫와 같은 土地에 定着한 設備이다.
③ 施設이나 施設의 一部와 空間的으로나 操業技術上 관련성이 있고 環境侵害의 發生에 重要한 作用을 한 i) 機械, 器具, 車輛과 其他 場所의 移動을 隨伴하는 技術設備, 및 ii) 附帶設備는 施設에 속한다.

- 第4條(責任의 排除)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招來된 損害에 대하여는 賠償責任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 第5條(因果關係의 推定) 개개의 事例에 있어서의 事情에 비추어 施設이 損害의 原因이 되기에 適合한 때에는 그 損害는 當該 施設 때문에 發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이러한 適合性은 操業의 過程, 사용된 設備, 投入되거나 排出된 物質의 種類 및 濃度, 氣象條件, 損害發生의 時間 및 場所, 損害의 態樣과 개개의 事例에 있어 賠償의 原因으로 積極的 또는 消極的으로 作用한 일체의 事情을 綜合하여 判斷한다.

- 第6條(推定의 排除) ① 複數의 施設이 損害의 原因이 된 경우 개개의 事例에 있어 다른 情況이 그 損害의 原因이 되기 適合한 때에는 推定은 排除된다.
② 單一施設이 損害의 原因이 된 경우 개개의 事例에 있어 다른 情況이 그 損害의 原因이 되기에 適合한 때에는 推定은 排除된다.

- 第7條(施設保有者에 대한 情報請求權) ① 施設이 損害의 原因을 提供한 것으로 가정할 事情이 存在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成立과範圍를 確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被害者は 그 施設의 保有者에게 情報의 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이 請求는 사용된 設備, 投入하거나 排出된 物質의 種類와 濃度, 其他 施設에 의하여 誘發된 作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는 法律의 規定에 기하여 非公開로 된 事項이나 非公開가 施設의 保有者나 第3者의 중대한 利益에 符合하는 것인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被害者는 情報가 不完全하거나 不正確 또는 不充分하다는 가정이 根據가 있거나 情報提供이 適切한 期間內에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施設의 保有者에게 資料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1項과 第2項은 準用된다.

第8條(行政廳에 대한 被害者의 情報請求權) 施設이 損害의 原因을 提供한 것으로 가정할 事情이 存在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成立과 範圍를 確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被害者は 施設을 認可하였거나 監督할 行政廳 또는 環境監視를 任務로 하는 行政廳에게 情報의 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行政廳은 情報의 提供으로 인하여 正常의 職務遂行이 저해되거나 情報內容의 公開가 公共福利에 不利益을 招來하거나 法律의 規定이나 情報의 本質上 특히 當事者나 第3者의 正當한 利益 때 문에 祕密維持가 要求되는 때에는 情報의 提供을 拒否할 수 있다. 第7條第1項第2文은 施設을 認可하였거나 監督할 行政廳에 準用한다.

第9條(施設保有者の 情報請求權) ① 施設의 保有者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請求權이 行使된 때에는 그 施設의 保有者는 被害者에 대한 자기의 損害賠償責任이나 다른 施設의 保有者에 대한 求償權의 範圍의 確定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 被害者 및 다른 施設의 保有者에게 情報의 提供과 閱覽의 承諾을 請求하거나 第8條에 揭記된 行政廳에게 情報의 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被害者에 대한 請求에 관하여는 第7條第2項 및 第3項第1文을, 다른 施設의 保有者에 대한 請求에 관하여는 第7條第1項第2文, 第2項 및 第3項이 각각 適用되고 行政廳에 대한 請求에 관하여는 第8條가 準用된다.

附　　則

第1條(시행일) 이 法은 . . .부터 시행한다.

第2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責任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經過規定) 이 法은 이 法施行前에 原因이 發生한 損害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III. [資料 I] 獨逸 環境責任法

第1條(施設의 環境侵害責任) 別表 I에 열거된 施設에 의하여 야기된 環境侵害로 인하여 第3者가 死亡하거나 또는 物件이 폐손된 때에는 그 施設의 保有者は 被害者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된 損害를賠償하여야 한다.

第2條(操業하지 않는 施設의 責任) 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施設에 의하여 야기된 環境侵害가 그 施設의 완성후 危險을 수반하게 할 狀況에 기인한 때에는 그 施設의 保有者は 第1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이 있다.
② 操業이 중지된 施設에 의하여 環境侵害가 그 施設의 操業中止前 危險을 수반하게 한 狀況에 기인한 때에는 操業이 중지될 당시의 그 施設의 保有者は 第1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이 있다.

第3條(概念의 定義) ① 損害가 地面이나 공기 또는 물을 통하여 화산되는 物質, 振動, 騷音, 壓力, 빛, 가스, 蒸氣, 熱이나 其他 現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損害는 環境侵害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은 事業場 및 倉庫와 같은 土地에 정착한 設備이다.
③ 施設이나 施設의 일부와 空間的으로나 操業技術上 關聯性이 있고 環境侵害의 發生에 중요한 作用을 한 i) 機械, 器具, 車輛과 기타 場所의 移動을 수반하는 技術設備 및 ii) 附帶設備는 施設에 속한다.

第4條(責任의 排除)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초래된 損害에 대하여는 賠償義務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5條(物的 損害賠償責任의 制限) 施設이 規定에 맞게 操業되고 있는 때에는(第6條第2項第2文) 物件에 대한 侵害가 非本質의이거나 場所의 關係에 비추어 忍容可能한 정도이면 物的 損害賠償義務는 배제된다.

第6條(原因의 推定) ① 個個의 事例에 있어서의 事情에 비추어 施設이 損害의

原因이 되기에 적합한 때에는 그 損害는 當該 施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推定한다. 이러한 適合性은 操業의 過程, 사용된 設備, 투입되거나 배출된 物質의 種類 및 濃度, 氣象條件, 損害發生의 時間 및 場所, 損害의 態樣과 個個의 事例에 있어 損害의 原因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作用한 일체의 事情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 施設이 規定에 맞게 操業되고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規定에 맞는 操業은 操業上의 特別한 義務가 준수되고 또한 操業上의 異常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③ 操業上의 特別한 義務는 損害의 原因으로 문제된 環境侵害의 防止를 목적으로 한 行政法上의 許可, 負擔, 執行可能한 命令 및 法規에 기한 것을 말한다.

④ 許可, 負擔, 執行可能한 命令 또는 法規에 操業上의 特別한 義務를 감시하기 위한 檢查가 規定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操業上의 義務는 준수된 것으로 推定한다.

1. 檢查가 문제된 環境侵害가 當該 施設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었던 期間중에 실시되고 또한 거기서 操業上의 義務違反에 관하여 아무런 端緒도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 당시 문제된 環境侵害가 10年 이상 경과한 경우

第7條(推定의 排除) ① 複數의 施設이 損害의 原인이 된 경우 個個의 事例에 있어 다른 情況이 그 損害의 原인이 되기에 적합한 때에는 推定은 배제된다.

② 單一施設이 損害의 原인이 된 경우 個個의 事例에 있어 다른 情況이 그 損害의 原인이 되기에 적합한 때에는 推定은 배제된다.

第8條(施設保有者에 대한 情報請求權) ① 施設이 損害의 原因을 提供한 것으로 가정할 사정이 存在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成立과 範圍를 確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被害者は 그 施設의 保有者에게 情報의 提供을 請求할 수 있다. 이 請求는 使用된 設備, 投入되거나 排出된

物質의 種類와 濃度, 其他 設備에 의하여 誘發된 作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利는 法律의 規定에 기하여 非公開로 된 事項이나 非公開가 施設의 保有者나 第3者의 중대한 利益에 부합하는 것인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被害者는 情報가 不完全하거나 不正確 또는 不充分하다는 가정이 根據가 있거나 情報提供이 適切한 期間內에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施設의 保有者에게 資料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1項과 第2項은 準用된다.

第9條(行政廳에 대한 被害者의 情報請求權) 施設이 損害의 原因이 된 것으로 가정할 事情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成立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被害者는 施設을 許可하였거나 감독할 行政廳 또는 環境侵害의 把握을 任務로 하는 行政廳에게 情報의 提供을 요구할 수 있다. 行政廳은 情報의 提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職務遂行이 저해되거나 情報內容의 公開가 聯邦이나 州의 福利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法律의 規定이나 情報의 本質上 특히 當事者나 第3者의 정당한 利益 때문에 祕密維持가 요구되는 때에는 情報를 提供할 義務가 없다. 第8條第1項, 第2項은 그 施設을 許可하였거나 감독할 行政廳에 준용한다. 被害者는 施設의 保有者, 그 法定代理人 또는 送達受領人の 姓名과 住所의 告知 역시 當該 行政廳에게 요구할 수 있다.

第10條(施設保有者の 情報請求權) ① 施設의 保有者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請求權이 행사된 때에는 그 施設의 保有者는 被害者에 대한 자기의 損害賠償義務나 다른 施設의 保有者에 대한 求償權의 範圍의 確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被害者 및 다른 施設의 保有者에게 情報의 提供과 閱覽의 承諾을 요구하거나 第9條에 揭記한 行政廳에게 情報의 提供을 요구할 수 있다.

② 被害者에 대한 請求權에 관하여는 第8條第2項, 第3項第1文 및 第8條第4項을, 다른 施設의 保有者에 대한 請求權에 관하여는 第8條第1項第2文,

第2項 내지 第4項이 각각 적용되고 行政廳에 대한 情報請求權에 관하여는 第9條가 준용된다.

第11條(過失의 競合) 損害의 發生에 被害者의 過失이 競合한 때에는 民法 第254條가 적용된다. 物件에 대한 損害의 경우에는 그 物件을 사실상 지배하는 者의 過失은 被害者의 過失과 동일하다.

第12條(死亡의 경우의 賠償義務의 範圍) ①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治療費와 傷害로 인하여 勞動能力이 상실 또는 감소되거나 支出이 증가됨으로써 초래된 財產上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賠償義務者는 그밖에 葬禮費도 이를 支出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者에게 賠償하여야 한다.
② 死亡한 被害者가 損害를 입은 당시 第3者에 대하여 法律上 扶養義務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관계에 있었고, 그 第3者가 被害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扶養을 받을 權利를 상실한 때에는 賠償義務者는 被害者가 推定餘命期間동안 扶養을 하여야 하는 한도에서 賠償義務를 부담한다. 賠償義務는 侵害 당시 第3者가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發生한다.

第13條(身體侵害의 경우의 賠償義務의 範圍) 身體나 健康을 해한 때에는 治療費와 被害者가 侵害의 結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勞動能力을 상실 또는 감소하거나 支出이 증가됨으로써 초래된 財產上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4條(定期金에 의한 損害賠償) ① 勞動能力의 상실이나 감소 또는 被害者の 支出의 增加로 인한 損害賠償 및 第12條第2項에 의하여 第3者에게 하여야 할 損害賠償은 장래에 걸쳐 定期金으로 지급한다.
② 民法 第843條第2項 내지 第4項은 준용된다.

第15條(責任의 上限) 賠償義務者는 損害가 동일한 環境侵害로 인하여 초래된 때에는 死亡, 身體 및 健康侵害에 대하여는 總額이 최고 1억6천만마르크까지, 그리고 物件의 損害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總額이 최고 1억6천마르크까지 責任이 있다. 동일한 環境侵害에 기하여 多數人에게 지급 하여야 할 賠償이 第1文에 揭記한 最高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個別賠償은 그 總額이 最高額에 달하는 비율로 감액된다.

第16條(原狀回復措置의 費用) ① 物件의 毀損이 自然 또는 景觀의 侵害를 수반한 경우 被害者가 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면 존재할 狀態를 복구하게 된 때에는 民法 第25條第2項은 原狀回復의 費用이 物件의 價額을 초과 한다는 理由만으로 부당하게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② 加害者は 賠償權利者の 要求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費用을 先拂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17條(消滅時效) 民法上의 不法行爲의 消滅時效에 관한 規定은 消滅時效에 관하여 준용된다.

第18條(追加的 責任) ① 이 法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責任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法은 核物質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侵害가 1960년 7월 29일의 파리原子力責任協定(1985년 7월 15일 공포된 原文, BGBI. 1985 II S. 963), 1962년 5월 25일의 브뤼셀原子力一般協定(BGBI, II S. 977) 및 1971년 9월 17일의 브뤼셀核物質海上輸送合意書(BGBI 1975 II S. 957, 1026)의 각 規定과 관련된 原子力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19條(損害顛補를 위한 配慮) ① 別表 II에 열거된 施設의 保有者は 그 施設때문에 초래된 環境侵害로 인하여 사람이 死亡하거나 身體 또는 健康이 손상되거나 物件이 폐손됨으로써 발생된 損害賠償의 法的 義務를 이행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이미 操業하지 않고 있는 施設로부터 특별한 危險이 유발된 때에는 管轄行政廳은 操業中止당시의 施設의 保有者에게 최고 10년이하의 期間동안 상당한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가름할 수 있다.

1. 이 法의 適用地域内에서 事業經營의 權限이 있는 保險會社의 責任保險
- 2.聯邦 또는 州의 信託 또는 保證
3. 이 法의 適用地域内에서 事業經營의 權限이 있는 金融機關의 責任保

險과 동일한 效力を 보장하는 信託 또는 保證

③ 1965년 4월 5일 공포되고(BJBI. I S. 213), 1988년 3월 22일의 法律 (BGBI. I S. 358)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責任保險法 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열거된 者는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義務가 없다.

④ 管轄行政廳은 別表II에 열거된 施設의 保有者가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義務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管轄行政廳에 의하여 지정된 합리적期間內에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를 다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操業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第20條(法規命令의 제정을 위한 授權) ①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에 의하여 다음의 事項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1. 施設의 保有者가 第19條에 의하여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를 개시하여야 할 時期
2.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의 範圍 및 程度
3. 金融機關이 발행한 信託 또는 保證에 관하여 부과할 諸條件
4.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를 감독할 行政廳의 節次 및 權限
5. 保險契約에 관한 法律 第158條C 第2項에 의한 管轄機關과 同法 第158條C 第2項에서 말하는 公告를 게시할 管轄機關
6. 施設의 保有者와 保險會社 및 信託 또는 保證을 인수한 者의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를 감독할 管轄行政廳에 대한 義務

② 法規命令은 聯邦上院에 送付되기 전에 聯邦下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法規命令은 聯邦下院의 決議에 의하여 改正 또는 거부될 수 있다. 聯邦下院의 決議는 聯邦政府에 送付된다. 聯邦下院에 法規命令이 도달된 후 3주간의 會期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原案대로 聯邦政府에 送付된다. 聯邦下院은 交涉團體의 構成에 필요한 數의 議員의 要求에 의하여 法規命令을 직접 審議할 수 있다.

第21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한 者는 1년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에 처한다.

1. 第19條第14項第1文에 위반하거나 第20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의한

法規命令과 관련하여 損害顛補를 위한 配慮를 전혀 아니하거나 이를 불충분하게 한 行爲

② 過失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6월이하의 自由刑 또는 180일 이내의 换刑留置가 가능한 罰金에 처한다.

第22條(過料規定) ① 第20條第1項第3號 내지 第8號에 의한 法規命令이 특정한 構成要件에 관하여 本條의 過料를 지시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위반한 者는 秩序違反으로 한다.

② 秩序違反에 대하여는 1만마르크이하의 過料에 처한다.

第23條(經過規定) 이 法은 이 法 施行前에 原因이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資料II] 獨逸 環境責任法 立法理由書

第 1 條：本條는 別表 I 에 열거된 施設(Anlagen)로부터 유발된 環境侵害(Umweltwirkungen)에 대한 無過失責任(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을 規定하고 있다. 이 責任은 특정한 法的財貨(Rechtsguter)에 대한 環境侵害로 인하여 초래된 損害에 대하여 발생하며, 그같은 環境侵害를 유발한 施設의 保有者에 대하여 발생한다. 責任은 限定的인 리스트(別表 I)에 포함되어 있는 施設類型에 국한되어 있다. 施設의 保有者는 無過失責任의 危險責任(Gefährdungshaftung)을 부담하는지 與否를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準備金(Rücklagen)이나 충분한 保險加入을 통하여 損害賠償을 위한 配慮가 가능할 수 있다. 限定된 施設리스트에 대한 責任의 結付는 獨逸法의 傳統에 따른 것이다. 그에 따라 危險責任의 構成要件은 狹義로 限界지워져 있고 비교적 정확하게 摘示된 “高度의 危險源”(Quellenerhöhter Gefahr)으로 限定되어 있다.

別表 I 은 궁극적으로 聯邦이미손防止法(BImSch V) 別表 4에 바탕을 두고 있다. 聯邦이미손防止法 別表 4는 특정한 施設類型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性質上으로나 操業上으로 유해한 環境汚染을 야기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公共(Allgemeinheit)내지 近隣(Nachbarschaft)을 위태롭게 하거나 현저하게 不利益을 끼치거나 汚染시킴에 특별한 정도로 적합한 것이 문제로 된다(聯邦이미손防止法 第4條第1項第1文). 그러므로 이 같은原則의 適用에 의한 적절한 檢證에 의하여 聯邦이미손防止法 別表 4에 포함된 施設類型은 責任法의 觀點에서도 역시 環境危險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聯邦이미손防止法 別表 4의 再檢證은 특별히 거기서 法的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모든 施設이 責任法의 觀點에서 요구된 潛在的危險(Gefährdungspotential)을 내포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聯邦이미손防止法 別表 4에 포함된 施設의 範疇를 넘어선 施設이 本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와 결합된 危險때문에 聯邦이미손防止法이 아닌 廢棄物處理法(Abfallbeseitigungsgesetz)의 適用을 받는 施設이다. 뿐만 아니라 核危險과는 다른 視點에서 核施設(Atomanlagen)역시 本法에 포함되어 있다.

損害가 環境侵害로부터 발생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要請은 第1條에 의한 危險責任의 環境政策의 目標設定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要請은 第3條第1項에서 더욱 자세히 規定되어 있다. 環境責任은 우선 環境侵害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思考原則은 聯邦이미손防止法에서 취해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施設들은 그들의 環境侵害行爲때문에 環境危害의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第1條는 거기서 責任法의 歸結을 찾게 된다. 責任은 – 水質管理法(WHG) 第22條와는 달리 – 사람의 死亡, 身體 또는 健康의 傷害로 인하거나 物件의 毀損으로 인하여 초래된 損害를 포괄한다. 다른 危險責任 예컨대, 責任法(HaftpfLG) 第1條第1項, 第2條第1項第1文, 航空法(LuftVG) 第33條第1項第1文, 道路交通法(StVG) – 과 같이 責任은 民法 第823條第1項의 規定形式에 따라 특정한 法的 財貨의 毀損을 전제로 한다. 열거된 法的 財貨의 하나가 毀損되지 아니한 사람은 環境侵害로 인하여 損害를 입었더라도 第1條에 의한 賠償請求를 할 수 없다. 특히 순수한 財產上의 損害는 賠償請求를 하지 못한다. 施設內에 머무는 勤勞者나 從業員, 訪問客과 다른 一團의 사람들은

責任을 통하여 보호된다. 이들은 통상 施設에 대한 그들의 近接때문에 특별히 危險하다. 外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責任의 個人的 保護領域의 制限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當事者의 損害賠償請求權을 爆破의 衝激이 工場의 문안까지나 또는 바깥까지 미치는지 與否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施設의 保有者는 이 規定에 의하여 과도한 負擔을 지지 않는다. 그의 同僚의 人格的 侵害에 대하여는 통상 災害保險請求가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施設의 保有者는 일반적으로 損害賠償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라이히保險法 第636條이하 및 關係法規), 보통 施設의 特別한 危險을 충분히豫見하면서 그에 자신을 노출시킨個人에 대하여는(예컨대 危險한 實驗에 참여한 招請科學者) 責任은 契約에 의하여 制限되나 이것은 責任法(Haftp flG) 第7條의 準用規定(免責의 禁止)에 의하여 無效로 될 수 있을 것이다.

第2條 : 第1條에 의한 責任은 施設의 存在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비록 施設이 完成되지 아니한 경우나 施設의 操業이 中止된 경우에도 그로부터 施設型危險(anlagentypische Gefahren)이 초래될 수 있다. 操業前에도 施設의 設立에 당하여 위험한 設備와 物質이 施設의 領域内에 도달할 수 있고, 操業中止後에도 위험한 設備와 物質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第2條의 存在理由가 있다.

第3條 : 第1項은 物質, 振動, 냄새 또는 其他 現象이 環境媒體(Umweltmedien)인 土地, 공기 또는 물에서 확산됨으로써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은 環境侵害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로지 이러한 方法에 의해서만 環境責任은 성립된다. 其他 現象으로서는 예컨대 빛, 溫度 및 放射線 등을 생각할 수 있다.擴散은 施設로부터 環境속으로 나오는 것과 그곳에서 分散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有害物質保管場所에 떨어지거나 機械의 裝置에 빠져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材料의 缺陷으로 機械의 部品이 분리되어 落下된 것이 損害의 原因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에 반하여 機械의 部品이 爆發때문에 흩어져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 그 損害는 擴散된 壓力의 波長이

損害의 原因으로 加功한 탓으로 環境侵害를 통해 야기된 것이 된다.

第2項은 聯邦이잇손防止法 第3條第5項第1號와 一致되는 것으로서 土地에 정착된 設備만이 施設로 간주됨을 명시하고 있다. 第3項 a號에 의하면 機械, 器具, 動力裝置 및 기타 場所의 變更이 가능한 技術的 設備 역시 施設이나 施設의 一部와 空間的 또는 操業技術上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施設에 속한 것이 되며, 環境侵害의 成立에 重要性을 띠게 된다. 第3項第6號에 의한 附帶設置도 이와 동일하다. 第2項 및 第3項은 聯邦이잇손防止法上의 概念과 密着되어 있다.

第4條：損害가 不可抗力으로 인한 때에는 賠償義務가 排除된다는 規定은 水質管理法 第22條第2項第2文과 責任法 第1條第2項第1文과 동일하다. 不可抗力의 경우의 責任의 排除는 확립된 判例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즉 損害가 사람의 洞察과 經驗에 의하여豫見不可能하거나 事案의 性質上(nach der Sachlage) 매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注意를 다하여도 회피할 수 없는 극도의 非正常的인 事件(ein außergewöhnliches Ereignis)으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賠償義務는 생기지 않는다. 그같은 事件은 外部로부터 야기되어야 하며, 施設責任分野에 있어서 그 것은 操業과 무관한 것(betriebsfremd)이어야 한다. 個個의 事例에 있어서의 不可抗力으로서는 颱風(Orkanböen), 暴雪(Schneestürme), 落雷(Blitzschläge), 새의 飛翔(Vogelflug)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自然的事態 뿐만 아니라, 사람의 行爲 역시 不可抗力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暗殺이나怠業(Sabotageakte)이 그것이다. 爭議(Streik) 역시도 다른 分野에서 施設의 操業으로 번져왔을 때는 피할 수 없는 事件에 해당될 수 있다. 交通手段의 罷業으로 企業의 同僚가 作業을 위해 나오지 못한 결과 施設의 操業上 異常이 초래된 경우도 같다. 이에 반하여 異常이 勤勞者들의 勤勞條件의 改善을 위한 爭議때문에 초래된 것인 때에는 피할 수 없는 事件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操業利益上의 事件만이 있는 것이다. 不可抗力은 일반적으로 損害의 原因에 責任이 있는 者가 특정한 事件을 위해豫防措置를 하였어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排除된다. 暴雨에

대비한 非常集水槽의 設置로 그 被害를 막거나 避雷針의 設置로 落雷를 막는 따위가 그것이다.

第5條(修正前) : 本條는 非本質의 損害 및 被害者에게 場所의 關係에 비추어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損害에 대하여는 賠償義務의 排除를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基準은 民法 第906條第1項 및 第2項에서 따온 것으로서 相隣關係法(Nachbarrecht)에서 오랜동안 실천되고 준수되어온 責任法上의 利益衡量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第6條 : 個個의 事例의 具體的 狀況에 의하면 강한 推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施設이 損害發生의 原因이 된 事實을 確信을 가지고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있다. 여기에 現行法의 主要問題가 있다고 지금까지의 論議는 말하고 있다. 이런 理由에서 被害者에게 第6條에 의한 原因의 推定을 통하여 證明輕減이 허용되게 된다. 이 規定의 射程距離는 第7條에 의한 推定의 排除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施設이 個個의 事例의 狀況에서 損害의 原因으로 적합한 경우 第1項에 의하여 그 損害는 施設에 의하여 事實上 초래된 것으로 推定된다. 個個의 事例에서의 適合性의 判斷에 있어 결정적인 觀點은 第1項第2文에 열거되고 있다. 우선 施設의 操業의 單一性(操業過程, 사용된 設備, 투입되고 배출된 物質의 種類와 濃度)이 문제 된다. 그밖의 것으로 열거된 氣象條件이 가능한 因果關係와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損害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損害의 施設에 대한 時間的 場所의 關係가 그 外様(損害의 態樣)과 함께 중요한 뜻을 가진다(損害發生의 時間 및 場所). 그 전형적인 例로서는 납이나 石綿에 의한 損害를 들 수 있다.

推定은 因果關係에 적합한 情況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事實의 인觀點에 기초한 檢證은 관계된 施設이 損害의 原因으로 적합한 事實을 結論짓지 않으면 안된다. 특정한 觀點으로부터 適合性에 대한 結論이 나온 경우 被告가 된 施設의 保有者는 반대되는 情況을 立證하여 原因의 推定을 번복시킬 수 있다.

第2項은 保有者가 正常操業(Normalbetrieb)의 條件을 立證한 때에는

原因의 推定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정당하게 제기된 領域의 考察은 第3者에 의한 加害는 真實蓋然性이 없다는 證憑을 근거지워준다. 그 결과 證明의 推定은 規定에 맞는 操業의 範圍를 벗어나거나 그 遵守를 立證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된다. 第2項第2文에 의하면 規定에 맞는 操業은 特別한 操業義務가 遵守되고 또한 아무런 操業上의 異常이 없으면 인정된다. 第3項은 特別한 操業義務의 内容을 規定하고 있다. 正常操業의 경우의 原因의 推定의 排除는 正常操業의 條件이 實제로 遵守되고 – 이것은 또한 뜻있게 보인다 – 계속적으로 이를 記錄하도록 강력한 動機賦與를 하게 된다.

이러한 動機賦與는 第4項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第4項第1號에 의하면 지시된 監視가 완수되고 있는 때에는 正常操業의 推定이 이루어지게 된다. 第4項第2號는 10年이 경과한 뒤에는 第1項의 證明의 推定은 – 異常事件이 排除될 수 있는 한 – 결과적으로 適用이 없게 하고 있다. 이 規定은 長期間에 걸친 계속적인 記錄은 전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많은 費用과 연관되게 하는 事情을 감안하고 있다. 이는 특히 長期間에 걸쳐 진행된 損害에 意義가 있다. 도대체 그같은 損害는 正常操業의 경우에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第7條 : 本條은 第6條에 의한 原因의 推定이 關係施設經營者에게 상상할 수 없는 負擔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推定의 翻覆을 위한 基準은 第6條第1項의 適用의 경우와 동일하다. 推定은 個個의 事例의 狀況이 當該 施設以外에 따른 情況이 損害의 原因으로 적합한 때에는 翻覆된다. 물론 第1項第1文은 複數의 施設이 損害의 原因으로 적합한 경우 이들 施設의 保有者는 다른 施設의 適合性을 立證함으로써 互換的으로 原因의 推定을 翻覆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複數의 施設이 損害의 原因으로 적합한 때에는 原因의 推定은 오직 이들 施設外에 다른 情況이 損害의 原因으로 注目될 때에만 배제된다. 그렇지 않으면 原因의 推定은 損害惹起適合性을 가진 施設의 全體保有者에게 第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基準에 따라 적용된다. 第2項은 第7條第1項第2文에서一般的 適合性判斷基準(allgemeine Eig-

nungskriterien)을 취하고 있다. 施設細分化的 觀點은 施設의 適合性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其他 情況이 문제되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다.

第8條: 第6條의 原因의 推定은 被害者에게 적지 않은 경우 損害賠償請求를 제기함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推定은 個個의 具體的 條件에서 施設의 操業이 損害의 原因으로 적합한 事情에 대한 被害者의 立證을 전제로 한다. 이 證明에 있어서는 施設이 어떤 方式으로 操業되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施設의 操業過程은 被害者에게 종종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理由에서 第9條 및 第10條(草案 第8條 및 第9條)는 施設의 保有者 및 特정한 行政廳을 상대로 한 情報請求權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被害者は 訴訟節次의 前段階에서 그가 施設의 保有者에 대하여 請求權을 가지는지 與否를 證明하여야 할 立場에 놓여 있다. 이는 그에게 불필요한 費用 및 訴訟上의 論爭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第9條(草案)는 被害者에게 施設의 保有者에 대한 情報請求權을 부여하고 있다. 이 規定은 被害者가 필요한 情報를 획득하기는 하되 保有者는 오직 꼭 필요한 限度内에서 그 義務가 부과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情報에 대한 無差別의 權利(Jedermann-Recht)는 이를 통해 배제된다. 被害者は 우선 損害가 초래된 事實을 立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밖에 구체적인 操業이 損害의 原因이 된 假定을 근거지울 事實이 존재하여야 한다. 더욱 被害者는 특정되지 않는 疑惑 以上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被害者는 情報가 環境責任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事實을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賠償義務가 第4條 및 第5條(不可抗力 및 근소한 損害 내지 예상되는 侵害) 때문에 배제된 때에는 情報請求權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情報請求는 특정한 目的 즉, 損害賠償請求權의 行使를 위한 것이므로 그 請求는 오직 특정한 事項에 관해서만 성립된다. 第1項第2文은 그같은 自明한 限界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로써 被害者は 施設로부터 나온 作用이 損害의 原因이 되었는지 與否에 관한 問題의 解答을 가능한 한 쉽게 해 줄 事項에 한해서 이를 획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第2項은 被害者와 施設의 保有者間의 상반되는 損害關係를 個個의 事例의 情況에 奏아 較量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規定이다. 被害者의 情報請求權의 法規가 特定한 施設의 祕密을 規定하고 있거나 施設의 保有者나 第3者의 우월한 利益으로 인하여 祕密保持를 諸요로 하는 경우 제한된다. 이 경우 施設의 保有者的 利益은 損害賠償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고려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保有者の 그같은 利益은 工場 내지 操業上의 祕密保護次元의 領域에 존재할 것이다. 保有者の 우월한 祕密保持利益이 존재하나 默祕權의 義務가 있는 鑑定(Sachverständigen)의 介入이 이루어진 까닭으로 判例에 의하여 公開義務(Offenbarungspflicht)가 발생되는 특수한 경우에 관한 規定은 그러나 빠져 있다. 이 問題는 제안된 法에 전혀 規定이 없으며 判例에 맡겨져 있다.

第3項은 제안된 條件下에서 被害者에게 문제된 企業에 대한 閱覽權을 인정하고 있다. 閱覽權은 情報가 불완전하거나 상당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거나 적절한 期間內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假定이 근거지워질 때 허용된다. 이 閱覽權의 原則的 補充規定을 통하여 施設의 保有者の 操業에 관한 文書나 企業에 대한 직접적인 接近이 제한받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被害者の 資料는 情報請求로 충족될 것이다. 第3項의 前提가 존재하더라도 문제된 모든 企業에 대한 閱覽權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第1項의 意味에 있어서의 情報의 經過, 解明에 한하여 인정된다. 第2項 역시 적용되므로 정당한 祕密保持利益은 閱覽의 경우에도 保護된다.

第4項은 무엇보다도 民法 第259條 내지 第261條의 適用을 통하여 被害者가 施設의 經營者에게 宣誓에 의한 保證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는 條件을 規定하고 있다.

第 9 條 : 環境責任訴訟에 있어서는 被害者가 請求權의 行使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行政廳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施設을 許可하고 이를 監視하거나 環境監視에 당하는 行政廳은 被害者가 접근할 수 없는 資料를 수중에 넣고 있을 수 있다. 情報를 요구당할 行政廳의 列舉로 情報提供義務가 있는 行政廳의 範圍가 동시에 제한되어 있다.

現行行政訴訟節次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情報請求權은 인정되지 않으며, 더구나 情報提供義務는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被害者가 필요한 情報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草案 第10條는 關係行政廳에 대한 被害者의 請求權의 發生要件을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被害者의 施設의 保有者에 대한 情報請求權에 관한 第9條의 規定에 關聯지워져 있으며, 또한 保護價値가 있는 被害者의 利益을 전제로 한다. 情報提供義務는 第9條第1項第2文에 規定된 事項에 국한된다.

第10條第2文은 行政訴訟法(Verwaltungsverfahrensgesetz) 第29條第2項의 規定內容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거된 條件下에서 어떤 우월적인 祕密保持利益의 保護을 분명히 하고 있다.

第10條는 公法上의 權利에 속하는 請求權을 規定하고 있다. 이런 理由로 이 請求權의 行使는 公法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節次에의 利害關係人의 參加 역시 行政訴訟法의 一般規定에 의한다. 民法 第259條 내지 第261條의 引用(Bezugnahme)은 – 草案 第9條와는 반대로 – 필요치 않다.

第10條： 특히 共同不法行爲者의 경우 第8條에 따른 責任을 分擔함에 있어 保有者는 다른 施設이 損害의 發生에 공동으로 原因을 제공하였는지 與否와 그 範圍를 확인하는데 정당한 利益을 가진다.

民法 第426條에 의한 求償請求와 第8條에 의한 責任分擔의 範圍는 이러한 確認에 좌우된다. 그리하여 第11條는 保有者에게 다른 施設의 保有者와 行政廳에 대한 적절한 情報의 提供을 구할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前提是 첫째 施設의 保有者가 環境責任法에 기한 請求權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한하여 그는 情報에 대한 保護價値가 있는 利益을 가지는 것이다. 情報請求權은 被害者에 대한 賠償義務나 다른 保有者에 대한 求償權의 範圍의 確定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된다.

第11條：本條는 民法 第253條의 適用에 의하여 責任法의 原則을 재천명하고 있다. 이 適用은 –道路交通法 第9條, 責任法 第4條, 航空法 第34條에 대응한다 – 物件의 毀損의 경우 그 物件을 事實상 지배하고 있는 者의

過失이 被害者의 過失에 비견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施設의 保有者는 그로 말미암아 物件이 훼손된 때에는 훼손된 物件의 所有者에게 직접적인 占有者(Besitzer)의 過失 역시 주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第12條：道路交通法 第10條, 責任法 第5條, 醫療器具法(ArzneimittelG) 第86條, 航空法 第35條, 原子力法(AtomG) 第28條 및 民法 第844條와 실질상 같다.

第13條：道路交通法 第11條, 責任法 第6條 및 醫療器具法 第87條와 실질상 같다.

第14條：道路交通法 第13條, 責任法 第8條, 航空法 第38條, 및 醫療器具法 第89條와 실질상 같다.

第15條(修正前)：環境責任法에 포함되는 개별적 施設類型과 상상할 수 있는 損害發生事故(Schadensfalle)의 多樣性(Vielgestaltigkeit)의 극도로 다양한 危險과 연관하여 物的 損害에 대한 個個의 事例와 관련된 責任의 上限 및 世界的으로 공통되는 責任의 上限을 의미있게 確定하는 것은 事實上 불가능하다.

第16條：本條는 自然 또는 景觀(Landschaft)의 毀損(Schadigung)과 동시에 연관된 所有權의 侵害(Eigentumverletzungen)의 경우에 있어서의 損害賠償을 規定하고 있다.

第1項은 加害者에게 原狀回復措置(Wiederherstellungsmaßnahmen)의 費用이 物件의 價額(Wert der Sache)을 초과하는 때에도 그 費用의 總額을 賠償하도록 義務지우고 있다. 그에 따라 自然과 景觀의 原狀回復에 관한 被害者の 利益은 損害賠償의 算定에 있어 고려되게 된다. 加害者は 본래의 狀態를 다시 회복할 義務가 現行法上으로도 부과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民法 第249條 第1項－自然回復[Naturalrestitution]). 所有者가 요구하는 한 그리고 實제로 가능한 한 파괴된 生態係(Biotope)는 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되살려지고 짓눌린 植物과 動物은 다시 번식하게 된다. 물론 自然回復의 請求는 民法 第251條第2項에 의하여 賠償義務者가

不相當한(unverhältnismaßig) 費用을 지급할 義務가 없음으로써 제한을 당한다. 不相當性(Unverhältnismaßigkeit)의 判斷은 무엇보다도 파괴된 對象의 物的 價額에 기하여 하게 된다. 하찮은 物件이지만 빈번하게 生態系의 으로 중대한 意義와 관련하여 環境責任法에 있어서도 一般原則은 適用이 있다. 賠償額의 上限은 個個의 事例의 狀況에 따라 발생된 生態系의 損害와 相當性의 原則의 考慮下에 확정될 것이다.

第2項은 被害者에게 –一般原則에 따라– 나중에 精算키로 하는 先拂請求權(Vorschußanspruch)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第16條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한 때에는 民法 第249條第2項에 의하여 확보된 金額과 마찬가지로 확보된 金額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第17條：本條는 責任法 第11條 및 道路交通法 第14條를 본받고 있다. 時效는 不法行爲法인 民法 第852條의 特別規定과 消滅時效에 관한 一般規定에 의하여 결정된다. 本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本法에 의한 請求權에 관하여 특별한 短期消滅時效의 優先適用을 規定한 契約의 有效與否가 문제로 될 수 있다(BGHZ 98, 235ff. 參조). 그것은 環境責任에 있어서는 特別規定은 導入되지 않아야 한다는一般的問題를 다루고 있다.

第18條：第1項은 環境責任法에 의한 危險責任 以外에도 다른 危險責任, 예컨대, 不法行爲(Delikt), 賠償, 求償請求가 가능함을 明示하고 있다. 本條는 특히 慰籍料請求(Schmerzensgeldansprüche)와 관련하여 중요한 意味가 있다. 왜냐하면 責任法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本項은 危險責任을 포함하고 있는 法規의 一般規定(예컨대, 生產物責任法 – ProdHaftG – 第15條第2項)과 같다.

第2項은 原子力責任에 대하여 거기에 열거한대로 우선 適用을 보장하고 있다.

第19條：本條는 別表 II에 열거된 施設의 保有者에게 第20條에 부합하는 施行令의 措置에 따른 顛補의 配慮를 義務지우고 있다. 이들 施設은 操業上 특별히 심각한 損害發生의 蓋然性을 지니고 있다. 損害가 발생한 경우 그같은 施設의 保有者에게 過失責任 있는 賠償을 하기 위한 經濟的 履

行能力이 결여된 것으로부터 被害者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같은 被害者에 대한 保護는 過度的 時期나 施設의 閉業後에도 요구된다.

第2項第1號 내지 第3號는 順補의 配慮의 效果를 확보하는 것이고, 責任保險加入 以外의 保險手段을 통하여도 順補의 配慮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第19條第3項은 義務保險法(Pflichtversicherungsgesetz-PflVG)을 본받고 있는데, 同法은 順補의 配慮에 대한 義務를 예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例外的 惠澤은 대개 특별히 높은 損害發生의 蓋然性을 가진 施設의 危險마저도 해소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第4項은 別表 II에 열거된 施設의 保有者가 順補의 配慮를 立證하지 않거나 適期에 立證하지 않을 때에는 施設의 操業을 全部 또는一部 금지시킬 수 있는 管轄行政廳의 權限(Befugnisse)을 規定하고 있다.

第20條：第20條는 聯邦政府의 授權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聯邦上院의 同意와 聯邦下院의 參與로 성립된다. 授權의 内容은 順補의 配慮義務, 그發效時期, 細部事項의 編成과 監督을 상세히 規定하는 것이다.

第20條第1項第2號에 의하면 各種施設에 대한 等級別로 된 順補金額은 결정된다. 基準은 損害發生의 蓋然性의 程度이다. 第20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는 順補를 위한 配慮와 관련된 行政的 規制(Verwaltungskontrolle)를 상세히 規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20條第1項第6號는 保險契約法(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第158條C第2項第1文 내지 第2文의 바람직한 適用을 분명히 하고 있다. 同法 第158條第2項第4文에 의하여 義務保險의 領域에 있어서의 公示(Anzeigen)를 통한 第3者에 대한 保險契約의 不成立이나 終了의 效果는 公示를 接受할 權限이 있는 地位가 결정되는 데 달려 있다.

第20條第1項第6號는 施設의 保有者, 保險業者, 委任이나 保險履行義務를 인수한 者의 追加的 公示義務를 規定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順補의 配慮의 變更이나 保險者 또는 委任이나 保險履行義務를 인수한 者의 交贊 및 本法에 의한 請求에 滿足을 줄 損害發生의 公告와 관련한 施設保有者の 公示義務에 관한 規定이 制定될 수

있는 것이다. 保險者나 委任 또는 保險履行義務를 인수한 者를 위해서도 公示義務가 規定될 수 있는 바, 順補配慮에 대한 基準契約의 終了 또는 解止에 관한 것이 그 예이다.

第20條第1項은 – 商法(Handelsgesetzbuch) 第292條를 본받아 – 法規命令(Rechtsverordnung)의 制定에 있어서의 聯邦下院의 共同作業을 規定하고 있다. 그같은 共同作業은 被害者와 企業을 위한 順補의 配慮의 重要性에 비추어 요청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環境責任法 자체에서 個個의 順補의 配慮를 規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發展에 대한 신속한 對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法規命令에 의한 規制方式이 우수한 것이 된다. 이러한 法規命令의 制定은 물론 聯邦下院과의 共同作業과 연관되어 있다.

第21條：第21條는 特別히 위험한 施設에 요구되는 順補의 配慮를 缺한 경우의 處罰要件을 간직하고 있다. 本條는 責任法 第6條, 原子力法 第94條와 같다. 第1項에서 보는 3年까지의 自由刑의 刑期는 順補의 配慮가 오로지 特別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事情을 고려에 넣고 있다.

第22條：科料의 構成要件은 法規命令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順補의 配慮의 編成을 가져올 規定에 대한 違反行爲에 관련되어 있다. 本條는 道路交通法 第24條, 航空法 第58條第1項第10號와 같다.

第23條：第24條(草案)는 本法의 遷及效(Rückwirkung)를 배제하고 있다. 危險責任은 발생된 損害가 本法施行後 原因을 이룬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損害가 長期間에 걸쳐 漸進的으로 발생된 때에는 危險責任은 本法施行後 초래된 損害部分에 한하여 성립한다.